

등록번호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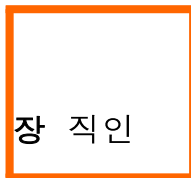
등록 신청인	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입금계좌	은행명	계좌번호	

농지등 소재지			농지등 면적(㎡)				전략작물직접지불금						
읍·면	리·동	지번 (임사지번)	농지등 소유자	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		농지등이용면적		신청구분 (이모작, 단일)		동계		하계	
				합계	농촌진흥 지역 안 (논+밭)	논	밭	작물 재배	휴경	재배 품목	신청 면적 (㎡)	재배 품목	신청 면적 (㎡)
합계													

위 등록신청인은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 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**



- \*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합니다) 제46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장)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\* 영 제50조 및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,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- \*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 제50조에 따른 등록제한을 받을 수 있고,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\* 이 등록증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